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방법 가이드 라인

희망의 서리에
안전한 먹을거리, 국민행복





목 차

1. 주의문구 규정 및 표시방법 3

2. 식품등의 대상별 주의문구 표시내용 4

[식품 표시대상] 4

- ① 육류 등 냉동식품
- ②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
- ③ 과일·채소류음료,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식품
- ④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 제품
- ⑤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
- ⑥ 당알코올류를 주원료로 한 제품
- ⑦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 ⑧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 ⑨ 컵모양 등 젤리 제품
- ⑩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사용한 식품과 교차오염이 가능한 제품
- ⑪ 카페인 함량을 ml 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
- ⑫ 선도유지제
- ⑬ 모든 식품

[식품첨가물 표시대상] 16

- ①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등

[기구 또는 용기 · 포장 표시대상] 17

- ① 식품포장용 랩
- ② 폴리스티렌,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및 요소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
- ③ 유리제 기구



주의문구 규정 및 표시방법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주의문구 표시기준

- ◎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
- ◎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
- ◎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
- ◎ 글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 주의문구 권장 표시방법

- ◎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붉은색**으로 표시
- ◎ 테두리 사용 또는 **바탕색과 구분되는 면**으로 표시



| 주의문구 권장표시 예시 |



식품등의 대상별 주의문구 표시내용

식품 표시대상

① 육류 등 냉동식품

주의
문구

"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참고
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2. 다. 냉동식품 표시사항〉
(6포인트 이상 표시)

- ✓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 또는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구분 표시
- ✓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경우 살균한 제품은 '살균제품'으로 표시
- ✓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을 첨가한 냉동제품은 '효모 또는 유산균수' 표시
- ✓ 냉동식품은 냉동보관방법 및 조리시의 해동방법 표시
- ✓ 조리 또는 가열처리가 필요한 냉동식품은 조리 또는 가열처리방법 표시

▶ 제조업체가 냉동식품인 빵류, 떡류, 젓갈류 및 초콜릿류를 해동하여 출고하는 경우

주의
문구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8조〉 바. 적용특례
(주표시면 10포인트 이상 표시)

제조업체가 빵류, 떡류, 젓갈류, 초콜릿류를 해동하여 출고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스티커, 라벨, 꼬리표를 사용할 수 있음

- | | |
|----------------------------------------------|-------------|
| ✓ 제조연월일 | ✓ 해동연월일 |
|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
| ✓ 해동 후 보관방법 | ✓ 해동 후 주의사항 |

②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

주의
문구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참고
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2. 가. 통·병조림 표시사항〉
(6포인트 이상)

- ✓ 통·병조림의 내용물은 고형량 및 내용량으로 구분 표시하고,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
※ 통·병조림식품은 통 또는 병에 넣어 탈기와 밀봉 및 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함
- ✓ 산성통조림은 "산성통조림"으로 표시
※ 산성통조림은 pH4.6 이하인 통조림을 말함

③ 과일·채소류음료,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식품

주의
문구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④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 제품

주의
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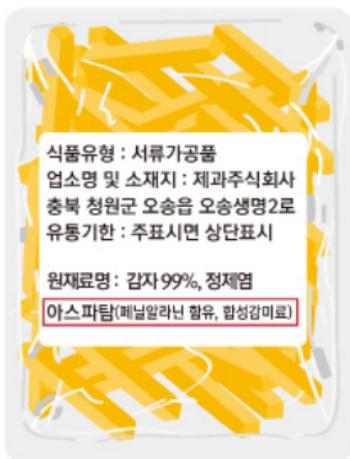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⑤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

주의
문구

"페닐알라닌 함유"



참고
사항

- ✓ 아스파탐은 페닐알라닌과 아스파라긴산으로 구성되어 일일 페닐알라닌 섭취를 제한하여야하는 페닐케톤뇨증 환자를 위해 주의문구 표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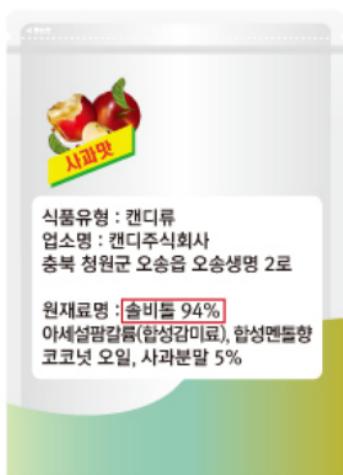
※ 페닐케톤뇨증 :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 결핍으로 페닐알라닌이 체내 축적되어 경련 및 지능장애, 발달장애를 일으키는 유전대사질환임

- ✓ 아스파탐은 식품첨가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식품 첨가물이므로 '합성감미료'를 표시해야함

⑥ 당알코올류를 주원료로 한 제품



"과량 섭취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



참고
사항

- ✓ 당알코올 종류 : 솔비톨(Sorbitol), 말티톨(Maltitol), 자일리톨(Xylitol), 에리스리톨(Erythritol), 아라비톨(Arabitol), 리비톨(Ribitol), 갈락티톨(Galactitol), 락티톨(Lactitol), 만니톨(Mannitol) 등

⑦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항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 ✓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는 성분을 제거 또는 제한하거나 다른 필요한 성분을 첨가하여 제조 · 가공한 제품

※ 선천성대사질환 : 유전자의 이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생화학적 대사에 결함이 있어 물질대사효소의 불능 또는 물질의 이송결함 등으로 유해물질이 축적되거나 필요한 물질이 결핍되는 질환

예시)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단풍당뇨증 등

⑧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주의
문구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항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 ✓ 환자용 균형영양식
- ✓ 당뇨환자용식품
- ✓ 신장질환자용식품
- ✓ 장질환자용 가수분해식품
- ✓ 열량 및 영양공급용 의료용도식품
- ✓ 선천성 대사질환자용식품
- ✓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



⑨ 한입크기로서 작은 용기에 담겨져 있는 젤리 제품 (컵모양 등 젤리 제품)



잘못 섭취에 따른 질식 방지 경고문구 표시

(예시) "얼려서 드시지 마십시오. 한번에 드실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잘 씹어 드십시오. 5세 이하 어린이 및 노약자는 섭취를 금하여 주십시오."



참고
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컵모양 등 젤리 제조기준>

- ✓ 컵모양 등 젤리의 크기는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내경이 5.5cm 이상 이어야 하고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 내경은 3.5cm 이상 되도록 제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컵모양 등 젤리 원료기준>

- ✓ 컵 모양 등 젤리의 원료로는 곤약, 글루코만난을 겔화제로 사용 할 수 없음

⑩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사용한 식품과 교차오염이 가능한 제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시설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다만, 세척·소독 등을 통해 혼입의 가능성에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제품은 OO(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알레르기 유발성분(13가지)

- ✓ 난류(가금류에 함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최종제품에 SO₂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

⑪ 카페인 함량을 ml 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

주의
문구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 와 "총카페인 함량 00mg" 표시



⑫ 선도유지제

주의
문구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용도 표시
"먹어서는 아니된다" 등의 주의문구



⑬ 모든 식품

주의
문구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식품첨가물 표시대상

- ①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등

주의
문구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은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사항



기구 또는 용기 · 포장 표시대상

① 식품포장용 랩

주의
문구

" 100°C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사용 "
"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게 사용 "



참고
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다. 1) 나)

- ✓ 식품포장용 랩은 제조에 사용하는 주원료 명칭 및 가소제, 안정제, 산화방지제 등의 첨가제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폴리스티렌,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및 요소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 · 포장

주의
문구

"식품가열 · 조리시 전자레인지 사용금지"



③ 유리제 기구

▶ 가열조리용 유리제 기구

주의
문구

" 표시된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 가열조리용이 아닌 유리제 기구

주의
문구

" 가열 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참고
사항

가열조리용 유리제 종류

✓ 직화용 (400°C 이상, 150°C 이상), 오븐용(120°C 이상)

전자레인지용 (120°C 이상), 열탕용 (120°C 이상)

※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참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방법 가이드 라인

이 자료는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참고자료입니다.

관련 규정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14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과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www.mfds.go.kr